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보 도 자 료	보다 나은 정부

2019년 12월 20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배포즉시)

배포일시	2019. 12. 19. (목)	담당부서	불공정무역조사과
담당과장	조택연 과장(044-203-5880)	담 당 자	장미경 사무관(044-203-5884)

신발「상표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」조사 개시 결정

- '19. 12. 19.[목] 제395차 무역위원회 개최 -

□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'19년 12월 19일(목) 제395차 회의를 개최하여 구찌* 신발에 대한「상표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」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힘

* 상표권자 '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(GUCCIO GUCCI S.P.A, 법인)을 지칭함

□ 무역위원회의 조사개시는 국내업체 3개사(A,B,C)가 구찌의 동일·유사상표를 부착한 신발을 네덜란드에서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했다는 (사)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*(이하 'TIPA')의 제보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**함

* 무역위원회 지정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임

* 무역위원회 직권조사는 세관 등 국내외 관계기관이나 불공정무역행위신고센터 등으로부터 혐의사실을 통보받아 불공정무역행위를 인지한 경우 등에 실시

○ 제보자인 TIPA는 국내 업체 A가 조사대상물품을 수입(3억원 상당)하여 이를 국내업체 B와 C가 판매한 행위는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된다며, 이들 업체의 조사대상물품에 대한 수입·판매행위의 중지, 폐기처분 등의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해옴('19.10.23.)

□ 무역위원회는 조사신청서를 검토한 결과, 조사대상물품이 조사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수입된 사실이 있고, 수입된 물품이 현재 유효한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함

○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는 개시 후 통상 6~10개월 동안 서면조사, 현지조사 등 조사 절차를 거쳐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함

□ 향후 무역위원회는 피신청인이 불공정무역행위를 하였다(상표권을 침해하였다)고 판정하는 경우, 피신청인에게 수입 및 판매 중지명령 등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며, 이를 통해 피해기업의 구제와 함께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

【붙임】 신발 상표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요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장미경 사무관(☎044-203-5884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**신발 상표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요**

□ **조사신청 개요** ('19.10.23. 신청)

○ **(신청인)** (사)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*

* 무역위원회 지정 불공정무역행위신고센터

- **상표권자 :**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 (이하 '구찌')

○ **(피신청인)** 국내 기업 'A', 'B', 'C'사

○ **(조사개시결정일)** '19. 11. 25.(월)

○ **(조사대상물품)** 신발 (HS코드: 6403.99.9000)

○ **(신청이유) 구찌 상표권의 침해 혐의**가 있는 **조사대상물품**(신발)을 피신청인들이 네덜란드에서 **수입하여 국내 판매**

< 이 사건 등록상표 및 조사대상물품 >

이 사건 등록상표		조사대상물품
제0070354호 (지정상품 : 신발 등)	GUCCI	
제0072780호 (지정상품 : 신발 등)	GUCCI	
제1057148호 (지정상품 : 신발 등)		
제1360799호 (지정상품 : 신발 등)		

□ **향후계획**

○ 서면조사, 현지조사 등 조사절차를 거쳐 조사개시 후 6개월 이내 판정, 침해 판정시 수입 중지 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 제재조치 예정